

2021. 10. 15. ~ 25.  
- 11일간 -

제33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 
집 회 결 과



장 성 군 의 회

## 처 리 결 과

의안 번호	의 안 명	의결 일자	심사 결과
2160	장성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	21.10.25.	원안가결
2161	202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	21.10.25	원안가결
2162	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	21.10.25	원안가결
2163	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	21.10.25	원안가결
2164	장성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	21.10.25	원안가결
2165	장성군 읍·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	21.10.25	원안가결
2166	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	21.10.25	원안가결
2167	장성군 읍·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	21.10.25	원안가결
2168	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	21.10.25	원안가결
2169	장성군 단일요금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	21.10.25	원안가결
2170	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	21.10.25	원안가결
2171	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	21.10.25	원안가결
2172	2021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	21.10.15.	원안가결

## 주요내용

### 1. 장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

○ 제출일자 : 2021. 10. 8.

○ 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○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2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2021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함

○ 주요내용

- 일 시 : 2021. 10. 21.(10:00) ~ 2021. 10. 22.(24:00)
- 범 위 : 군수 및 『장성군 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』 제2조에서 규정한 관계공무원
- 장 소 : 장성군의회 본회의장

○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### 2.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

○ 제출일자 : 2021. 10. 15.

○ 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○ 제안이유

- 2020.11.21. ~ 2021.11.20.까지 장성군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, 예산집행상황 등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면밀하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,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, 잘못된 사항은 시정·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.

○ 주요내용

- 감사기간 : 2021. 11. 22. ~ 12. 7.(기간 중 9일간)
- 감사방법 :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실시
  - ※ 현장방문 병행 추진
- 대상기관 :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
- 대상사무 :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규정된 사무

○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3.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총무과)

○ 제출일자 : 2021. 10. 8.

○ 제안이유

- 공공보건의료 분야 역할 확대 및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 강화를 위한 보건소 기구 정비를 추진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보건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함.

○ 주요내용

- 직급별 정원 조정 : 보건소장 직급 상향(4급) 및 2과(5급) 설치

(단위 : 명)

구분	계	일 반 직					정무직	별정직	연구직	지도직
		계	4급	4~5급	5급	6급이하				
당초	670	643	3	2	33	605	1	1	3	22
변경	670	643	4	1	35	603	1	1	3	22
증감	670	643	+1	△1	+2	△2	-	-	-	-

※ 공무원 총정원 변동 없음

○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#### 4.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○ 제출자 : 장성군수(재무과)

○ 제출일자 : 2021. 10. 8.

○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(2021.7.13.시행) 제정으로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사항이 이관됨에 따라, 지방보조금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
○ 주요 내용

-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2조)
  - 지방보조금 관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를 따름
-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(안 제3조)
  -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예외조항 규정(재해복구, 지역경제 활성화 등)
-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(안 제5조)
  - 교부결정 시 교부목적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
- 교부결정의 취소(안 제6조)
  - 지방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교부결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 규정
    - 승인 없는 사업 중지, 지방보조금 외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
    - 사업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
-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, 민간위원의 임기 등 규정(안 제10조~제19조)

○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## 5. 장성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안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기획실)

○ 제출일자 : 2021. 10. 12.

○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‘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’를 설치 하여야 하며, 그 기능이 유사한 「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의 ‘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’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효율적·체계적 관리를 기하고자 함

○ 주요내용

- 기능 및 대행(안 제2조)
  - (기능) 지방재정영향평가, 투자심사 등
  - (대행) 장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
- 준용(안 제3조)
  -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조례 규정 외 필요한 사항은 「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름

○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## 6. 장성군 읍·면민의 날 지원 조례안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총무과)

○ 제출일자 : 2021. 10. 8.

○ 제안이유

- 읍·면민의 날 행사를 통한 지역민 화합 및 소통의 장 마련
- 소규모 지역축제 활성화를 통한 전통문화 계승 발전

○ 주요내용

- 읍·면민의 날 지정(안 제2조)  
(읍·면민의 날 지정) 읍·면민의 날은 읍·면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.
- 읍·면민의 날 지원(안 제4조)  
(예산의 지원) 장성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  1. 읍·면민의 날 기념행사
  2.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

○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7.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총무과)

○ 제출일자 : 2021. 10. 12.

○ 제안이유

- 남북교류협력법 개정(시행 2021.3.9.)으로 기초자치단체도 남북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.
-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전국 시군구 차원의 남북교류 정책과제 발굴과 중앙 정부와 기초자치단체 간 정책 협의를 담당할 창구로서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임.
-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.

○ 주요내용

- 협의회 명칭, 목적, 사업(안 제1~3조)
- 협의회 위원 및 임원의 구성, 의무, 권리, 임기(안 제4~10조)

- 총회, 운영위원회, 특별기구, 사무국 운영(안 제11~23조)
- 협의회 재정 및 회계(안 제24~27조)

○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8. 장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주민복지과)

○ 제출일자 : 2021. 10. 8.

○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9조(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의 규정에 따라 읍면 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위탁 기간과 갱신기간의 개정

○ 주요내용

-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(안 제25조)
  - 위탁 기간 : 현행 1년 → 변경 5년
  - 갱 신 : 1회, 5년이내

○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9.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민원봉사과)

○ 제출일자 : 2021. 10. 8.

○ 제안이유

- 상위법 「건축법」 「건축법시행령」 「건축물관리법시행령」 시행에 따른 장성군 건축조례의 관련 조문 개정과 건축 인·허가 업무 추진시 나타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.

## ○ 주요내용

- 가설건축물 농막 규정 변경(안 제26조제2항제4호)
  - 가설건축물 규정을 세분화하여 주민들의 혼란 방지
- 야외 흡연실 규정 삭제(안 제26조제2항제8호)
  - 건축법시행령에 세부 규정을 신설, 조례 이중규정 삭제
- 현장조사업무 대행자 지역규정 삭제(안 제31조제3항)
  - 장성군 소재지 대상 사무로 제한 한 규정 삭제
- 업무대행 건축사 선임 규정 삭제(안 제31조제5항)
  - 과도한 업무 제한 사항으로 규정 삭제
-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규정 변경(안 제34조)
  - 건축물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관련 규정 변경
  - 해당 건축물은 기존 조례 규정 대상으로 한정
- 주택유지 관리지원 규정 삭제(안 제35조)
  - 건축법 제35조의 2 삭제
-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정비(안 제51조제2항)
  - 단독주택의 경우 1년 1회 3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규정 삭제

## ○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## 10. 장성군 단일요금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경제교통과)

○ 제출일자 : 2021. 10. 8.

### ○ 제안이유

- 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, 지역 주민의 보편적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거리·구간에 따라 차등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농촌버스 요금을 단일요금(1,000원)으로 변경하고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함

## ○ 주요내용

- 단일요금버스 정의(안 제2조)
  - 거리에 관계없이 단일화된 요금을 받는 농촌버스
- 적용구간(안 제4조)
  - 장성군 관내에서 농촌버스를 승차 및 하차하는 경우
- 적용대상(안 제5조)
  - 장성군 농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군민과 장성 방문객
- 지원 및 정산 등(안 제7~9조)
  - 단일요금 운행으로 버스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액 지원을 위한 용역실시 등

## ○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## 11. 장성군 100원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경제교통과)

### ○ 제출일자 : 2021. 10. 8.

### ○ 제안이유

- 운행지원금 정산 시 보관용 이용권(마을대표자 자체보관)과 청구액을 대조
  - 확인하여 지급하는 것보다 회수된 이용권(지급용)과 택시영수증을 대조
  - 확인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용권을 지급용만 변경 제작
- 이용권 서식의 ‘장성군수’ ⇒ ‘장성군’ 으로 변경  
(공직선거법 기부행위 금지 규정과 관련)

### ○ 주요내용

- 이용권 서식 변경(안 제5조제2항)
  - 100원 행복택시 이용권은 별표1 과 같다. 로 개정

- 【별표1】 이용권 서식의 ‘장성군수’ 를 ‘장성군’ 으로 변경
- 보관용과 지급용으로 일체 제작 ⇒ 지급용만 제작
- 이용권 전자카드 도입 신설(안 제5조제3항)
  - 무단복제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카드 등을 도입할 수 있다.
- 이용권 교부·정산 방법 변경(안 제7조제1항, 제3항)

구 분	현 행	변 경
교부	<마을대표자> - 지급용과 보관용을 분할하여 이용권자에게 교부 - 보관용은 자체보관후 다음 달 제출	<마을대표자> - 이용권을 이용권자에게 교부
정산	<군> - 마을대표의 보관용 이용권과 택시 운전자의 청구액 상호 대조 확인후 지급	<군> - 회수된 이용권과 택시영수증을 대조 확인후 지급

○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12. 장성군 수도급수 및 수도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제 출 자 : 장성군수(맑은물관리사업소)

○ 제출일자 : 2021. 10. 8.

○ 제안이유

-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의 분할납부와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상위 법령에 근거없는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

○ 주요내용

- 수도요금 분할납부(안 제29조)

- 수도사용자의 부담 완화를 위한 수도요금 분할납부 규정 신설
- 가산금 부과 폐지(안 제31조)
  - 상위법률의 위임없는 가산금(2%) 부과규정 삭제
-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감면규정 신설(안 제35조)
  - 저소득층 주민들의 수도요금 부담완화를 위한 규정 명시(30% 감면)

○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### 13.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

○ 제 출 자 : 김희식의원

○ 제출일자 : 2021. 10. 8.

○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의 실현과 장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집행기관 사무전반에 관하여 민밀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함

○ 주요내용

- 위원회명 : 2021년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
- 활동기간 : 2021.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
- 구 성 : 7명
  - 위원장 : 고재진 부의장
  - 간 사 : 심민섭 의 원
  - 위 원 : 이태신, 김희식, 오원석, 김미순, 차상현 의원
- 활동사항 : 집행기관 보고사항 및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
- 감사계획서 및 보고서 의결

- 감사계획서 채택 : 332회 임시회 의결
- 감사보고서 채택 : 333회 정례회 의결

○ 의결결과 : 원안가결